

# 동물의료에 있어서의 “동물간호사”의 위상에 관한 연구

김병성(金炳星) 역 / 대한수의사회 고문

주) 이 원고는 일본수의사회잡지(Vol.56, 2003, 692p~694p)를 번역한 것으로 일본수의사회 소동물위원회(2003년 4월 23일) 보고내용입니다.

소동물위원회는 일본수의사회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29일자로 자문을 받게된 「소동물의료체제의 구축(AHT제도를 포함함)」이라는 과제에 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동물의료에 있어서의 “동물간호사”의 바람직한 위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마무리하였다.

- 다 음 -

일본수의사회는 금후 이 보고서의 요지를 근거로하여, 관계부처에 대한 요청활동을 포함하여, 여러단체·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수행을 도모하여, 소동물체제의 가일층의 정비에 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 1. 검토경위에 대하여

(1) 이른바 “동물간호사(이하 ‘AHT’라 칭한다)의 양성이나 인정등 그 위상에 관한 검토는 지금까지, 일본수의사회에 AHT제도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의료에 관한 보조자를 양성하는 제도의 인정기준의 검토등을 개시하고, 그 검토결과를 기초로 하여, 1989년에 AHT양성학교인정시스템(골자안)을 책정하여 지방수의사회의 의견을 청취한 경위가 있다.

(2)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인정시스템의 운용은 시기상조라하여, 구체적인 안이 검토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이르러서 AHT의 사회진출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2001년 11월 일본수의사회장의 자문을 받아, 본위원회에서 동물의료 종사자로서의 AHT의 건정한 육성과 동물

의료체제정비의 관점에서, AHT의 바람직한 위상의 검토를 개시하였다.

(3)위원회 검토에 있어서, 우선 AHT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중요한 논점을 정리하는 동시에, ①진료시설에서의 AHT의 영입상황 근무조건, 업무내용 등의 근무실태 및 ② AHT양성학교의 경영실태, 양성년한, 이수 과목, 시설·설비, 교원수 등의 양성실태를 파악하기로 하여, 소동물진료시설 및 AHT 양성시설의 개설자에 대하여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현황 및 앞으로의 정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1) AHT가 담당하는 업무 및 그 양성 등

가. 동물의료기술이 고도화되고 또한 전문·세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동물의료에 대한 사육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수의사 혼자서의 동물 의료를 제공 한다거나, 진료시설의 운영을 한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나. 현재에 있어서, 소동물 의료부문에 있어서는 동물간호사, AHT 또는 VT라고 칭하는 자가 많은 진료시설에서 고용되어 ① 수의사의 지시하에 동물 진료의 보조, 임상검사, 사양관리, 사육주에 대한 보건 위생관리지도 ② 진료시설사무 ③ 기타 동물에 대한 이·미용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동물의료종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있어, AHT는 동물의료에 있어 독자적인 직업분야로서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AHT에 관하여는 그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일정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게 되는 것인 바, AHT가 동물의료종사자로서 동물 진료시설에 영입되어, 독자적인 직업분야로 정착되어 가고있는 상황하에서 ① AHT의 양성을 목적으로한 교육훈련시설이 전국 각지에 개설되어져, 각각 독자적인 교과 과정에 의하여 양성을 하고있는 한편, ② AHT양성시설수료자 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AHT자격인정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수의 민간조직이 출현하고 있다.

라. 현재 AHT양성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전수학교, 각종학교, 기타 합쳐서 70개

이상이 개설되어있고, 매년 졸업자가 2,000명이상이며, 이와 같은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AHT양성시설수료자 등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각각 독자적으로 일정한 시험을 실시하게하고 합격자에 AHT인정증을 교부하는 민간조직이 3개소(사)일본동물 병원복지협회가 있다.

마. 본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실정을 접수하여 소동물진료시설 및 AHT양성학교의 개설 자에 대하여 「AHT의 현황에 관한 앙케이트조사」 및 AHT양성학교의 현황에 관한 앙케이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를 보면,

1. 소동물진료시설의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152개소·156개소 AHT가 공용되어, 수의사의 보조자로서 근무하고 있다.
2. AHT의 업무 범위는 각 진료시설마다 다르며, 통일적인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3. 90%이상의 진료수의사가 통일적인 교과과정에 의한 AHT의 양성을 희망하고 있으며, 80%이상의 수의사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AHT의 인정제도가 필요하다고 하고있다.
4. 현재의 AHT교육에 있어서는 교육년한, 교육 과목,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등의 내용이 양성시설마다 다르고 또한 진료시설에서 AHT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나, 인정기준은 구구하며 통일적인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5. 진료시설에서 근무하는 AHT중에서 25만엔 이상의 월수입을 얻고 있는 자는 10%정도 밖에는 안되며 민간급여통계(1997년도

국세청)에 의한 20~24세의 여성의 평균월 수입 25.8만엔 25~29세의 여성의 평균월수입 31.1만엔에 비해 저수준에서 멈추고 있다.

6. 진료시설에서 근무하는 AHT의 연령구성을 보면 21~30세의 자가 전체의 4분의 3을 점유하고 있으며 41세이상의 자는 10%이하이어서 AHT가 안전·성숙한 직업분야로 발전 할 수 있는 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금후 동물의료종사자로서의 수준높은 AHT의 공급체제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① 양성시설에서 교육의 교과과정, 시설·설비의 정비기준이나 인정기준의 통일적인 정비와 함께 ② AHT를 받아들이는 진료시설에 있어서의 고용조건, 노동복지대책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AHT가 맡아서 하는 업무와 수의사법과의 관계 등

가. 동물의료는 ① 국민에 대하여 중요한 위치를 접하는 사육동물의 재산가치의 보호 ② 그 생산의 진흥을 통한 관련산업의 육성 또한 ③ 동물의 건강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건강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보아 동물의료에 관련되는 일련의 행위, 즉 「사육동물의 진료」에 대하여는 가령 당사자 간에 합의와 성립이나 또는 금전상의 수수를 예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유로이 실시하는 것은 인정되어 있지 않다.

나.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수의사법에서는

수의사의 자격을 정하여 수의사 이외의 자가 「사육동물의 진료」를 업으로 한다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AHT가 맡아서 하는 업무중에서 「사육동물의 진료의 보조행위」 이하 “진료보조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의사의 업무독점으로 되어있는 ① 「진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그 보조를 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는 바 진료행위와 「진료보조행위」와의 관계나 ② 현행의 법제도하에서 수의사 자격을 갖지 아니한 자에 허용되어지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가 분명하게 정의 되지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진료시설에서 AHT의 수용이 진전되고 있는 동시에 민간조직에 있어서 AHT의 양성과 인정이 각 사업주체의 독자적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등 현상에서의 실태만이 선행되는 가운데 금일에 이르고 있다.

다. 현재 AHT가 대응하고 있는 업무는 ① 주치수의사의 지시하에서 행위는 동물보정등의 「진료의 보조」 혈액검사 등의 「검사」 입원동물의 간호 등의 「사양관리」 동물 사육주에 대한 식이영양관리 등의 「보건위생지도」 ② 병원접수실 등의 「진료시설사무」 ③ 트리밍 등의 동물 「이·미용」 등의 업무로 크게 분류되어 있다.

라. 이들 AHT가 맡아서 하는 업무중에서 「진료의 보조」 즉 「진료보조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진료행위」에 상당된다고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의 내용 및 동물의료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서는 당해행위를 한

AHT와 당해행위를 하게한 수의사 쌍방이 수의사법제17조위반에 부처지게 되는 것이다. 금일수의사가 일체의 보조자 없이 동물医료를 수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 한하여 「주치수의사의 직접감독하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보조자에 의하여는 그것이 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진료행위」라 할지라도 당해 행위를 실질적으로는 주치수의사 스스로의 행위로서 평가할 수있는 것으로 하여 현실정하에서 AHT에 관하여는 하등의 법적인 자격조건이 부여되어있지 않은 상태하에서도 AHT가 행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일정한 「진료보조행위」는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마. 그러한 반면 동물의료에 있어서는 진료의 보조자에 대한 법적자격요건 등이 정비되어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진료보조행위」로서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 기본적으로는 단순 및 기계적인 행위에서 제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수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이 아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행위는 비록 주치수의사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경우에라도 「진료보조행위」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바.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전제로 「진료보조행위」를 구분하였을 경우에 ① 「진료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진료를 완수하기 위하여 이와 일체적으로 행하여지는

「진료보조행위」 ② 「진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나 주치수의사의 직접 감독하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보조자에 허용되어지는 「진료보조행위」 ③ 「진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며 비록 주치수의사의 여하한 관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보조행위」의 3종으로 구분되어 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진료 보조행위」에 대하여는 전기한 바 있는 ①에 구분되는 행위를 포함하여 주치수의사의 진료와 일체적으로 행하여지는 이상, 보조자가 행하는 「진료보조행위」는 모두 주치수의사의 지시하에서 보조자가 행할 수 있는 「보조자의 상대적 행위」로서 취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진료보조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① 일상검사 ② 동물의 이·미용 ③ 진료시설사무에 대하여는 보조자인 AHT가 주치수의사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행할 수 있는 「보조자의 상대적 행위」라고 보아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 3. 앞으로 대책에 관하여

#### (1) 「진료보조행위」 범위의 명확화 등

가. 동물医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① 어떠한 조건하에서의 어떠한 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되는 것인가. 또한 ② 「진료보조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가 현행 법규 상으로 보조자의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가.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그 수의학상의 전문적 판단이나 기술수준의 필요성 정도 등에 상응하게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


- 나. 전기 “가”에 의하여 보조자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가 정리되어 명확하게 된 다음 보조자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재평가하게 되면, 그 조건정비등 새로운 법의 정리가 필요하게 되나, 법령의 검토에 있어서는 동물사육자를 위시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동물의료체제 확보의 관점에서 검토가 되어지도록 할 것.

(2) 동물의료에 관한 보조자의 양성 및 인정제도 등

- 가. 동물의료에 관한 보조자로서의 AHT에 관하여는 금후 그 진정한 육성과 동물의료종사자로서의 정착을 추진 할 필요가 있는 바 그를 위하여는 현행의 보조자의 업무 중, 적어도 「주치수의사의 지도하에서 행하는 동물진료의 보조 동물의 사양관리 동물사육자의 보건위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련되는 양성시설에서의 교과과정 시설정비나 교육체제에 대하여는 관련분야의 학식이 있는자를 포함하여 관계자간의 협의를 추진시켜 통일적인 기준을 책정하여 당해기준에 적합한 양성시스템을 기능화시킬 필요가 있다.

- 나. AHT의 인정에 관하여는 현재, 독자적으로 보조자를 인정하고 있는 조직이 합동하여

협의회조직을 구성하도록 촉구하여 관계자간에 공통의식과 통일된 기준하에서 인정을 행하도록 함으로서 AHT의 질의 확보가 도모되어 이들의 자가 동물의료종사자로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하여 동물진료개설자의 선택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인정시스템의 정비를 할 것.

- 다. 전기(1)의 “나”에 따라 「진료보조행위」 범위의 재평가를 위한 법정비검토를 하고자 할때는 의료에 있어서의 간호사등의 의료종사자와 동일하게 동물의료에 관한 보조자양성이나 자격인정제도의 정비에 대하여 전기(1)의 “나”와 동일하게 적정한 동물의료제공과 함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등 광범위한 관점에서 검토가 진행되도록 할것. 또한 새로운 법정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물의료제공체제정비를 도모하는 뜻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되기때문에 수의료법에 기초를 둔 「수의료제공체제 정비 기본계획제도」 테두리 안에서 「동물진료보조업무의 범위나 동물의료보조자의 자격제도」를 검토하도록 하면서 수의사(事) 심의회에서 심의를 추진할 것. 

소동물위원회 위원

- 오이파현수의사회회장
- 북해도수의사회회장
- 고오베시수의사회회장
- 동경도수의사회이사
- 가와사끼시수의사회회원
- 고오찌현수의사회회원
- 미야기현수의사회이사
- 사이다마현수의사회이사
- 지바현수의사회이사(총9명)